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71

제출년월일 : 2020. 10. 16.
제출자 : 김태희 의원 외 5명

1. 개정이유

-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교육·점검·제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중 사용제한 규정 강화 (안 제3조)
- 교육 및 점검 조항 신설 (안 제7조)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4. 예산수반사항 : 붙임2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5. 현행조례 : 붙임3

-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6.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0. 9. 24. ~ 2020. 9. 29. (5일간)

[붙임 1]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안산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안산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안산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중 “업무추진비는”을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으로 하고, “사용 · 집행 하여야 한다.”를 “업무추진비를 사용 · 집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변경하고,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제7조를 제9조로 변경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안산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안산시의회 의원이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추진비”란 안산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안산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안산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p>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신설> 	<p>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 ----- ----- ----- -----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p> <p>5.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6.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u></p> <p><u>7. (현행 제5호와 같음)</u></p>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p><u>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 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u></p> <p><u>②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u></p>
<신설>	<p><u>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안산시의 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9조(시행규칙) (현행 제7조와 같음)</u>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471
----------	-------

제안년월일 : 2020. 10. 29.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수정이유

- 외래어를 순화어로 다듬고, 중복된 의미를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수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를 “점검하여”로 수정함.
(안 제7조제2항)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를 “점검하여”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생략) ②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 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 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점검하여 ----- ----- -----.